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37

발의연월일: 2020. 11. 13.

발 의 자:어기구·윤재갑·박 정

소병훈・황 희・김정호

허종식 • 박상혁 • 최인호

이장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 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재와 간벌재의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소요가 많으나 연접된 시·도를 포함해도 산림면적이나 목재 생산량이 부족하여 '목재'와 '지역'에 대한 정의를 재구분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또한, 타 제도와 유사성이 높으며 운영 실효성이 저조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를 폐지하는 한편(안 제12조제2항 삭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샘플조사를 실시하므로 목재생산업의 특성상 균일한 제품의 생산이 어렵고 유통과정에서 온도나습도 등 기상여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자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목재

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1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를 ""지역 목재"란 해당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단위 권역 또는 해당 권역과 연접된 도 권역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지역 목재 이용제품"으로, "시·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도 단위 권역 또는 해당 권역과 연접된 도 권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인증·인정에"를 "인증에"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인증·인정 등)"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인정을"을 각각 "인증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벌재"를 "목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증·인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증·인정기준에"를 "인증기준에"로,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를 "인증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인정

이"를 "인증이"로, "인증·인정을"을 "인증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인정을"을 "인증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인증 또는 인정을"을 "인증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인정기준에"를 "인증기준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인정이"를 "인증이"로, "인증·인정을"을 "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인정의"를 각각 "인증의"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인증·인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벌재"를 "목재"로 한다.

제44조제1호의2 중 "인증·인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증 또는 인정을"을 각각 "인증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간벌재"를 "목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 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인증 또는 인정을"을 각각 "인증을"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u>	10. <u>"지역 목재"란 해당 도(특</u>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도
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다. 이하 같다) 단위 권역 또
<u>시·도 지역 내에서</u> 생산된 목	는 해당 권역과 연접된 도 권
재를 말한다.	역 내에서
11. " <u>지역 간벌재 이용제품</u> "이	11 <u>지역 목재 이용제품</u>
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	
장이 소재하는 <u>시·도 지역 또</u>	<u>도</u> 단위 권역
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또는 해당 권역과 연접된 도
<u>생산된 간벌재</u> 를 사용한 비율	권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
회) ① (생 략)	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②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2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 6. (생략)

③ ~ ⑤ (생 략)

전) ① (생 략)

-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 〈삭 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 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 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u>(인증·인정 등)</u> ① 다음 각 제14조(인증) ①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 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 증
 -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 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 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

- 3. ~ 6.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 전) ① (현행과 같음)

세14소(인능) ①인
<u> </u>
인증을
1. • 2. (현행과 같음)
<u><</u> 삭 제>
4 <u>목재</u>
②
<u>인증</u>
인증기준
에인증하여야-

를 <u>인증 또는 인정하여야</u> 한다. ③ (생 략)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u>인증·</u>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 2. (생략)
- 3. 제2항에 따른 <u>인증·인정기준</u> <u>에</u>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 5 제4항에 따라 <u>인증·인정이</u>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u>인</u> 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u>인증·인정의</u> 신청 절차, <u>인증·인정의</u> 표시방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 ①·② (생 략)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 ③ -----

③ (현행과 같음)
4
인증이
<u>인증을</u>
인증을
·.
1
<u>인증을</u>
2. (현행과 같음)
3 <u>인증기준에</u>
⑤ <u>인증이</u>
<u>인증을</u>
,
⑥ <u>인증의</u>
<u>인증의</u>
]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 로, "<u>인증·인정</u>"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생략)

- 제19조(우선구매) ① 국가·지방자 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 매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

 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

 람이 만든 목재제품
 -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u>간벌재</u>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 4. 5. (생략)
 - ② (생략)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에 종사하는법인 또는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

<u>인증</u>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우선구매) ①
<u>.</u>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목재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

- 1. (생략)
-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u>인</u> 증·인정 업무
- 2. ~ 4. (생 략)
-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u>인증 또</u> 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인증 또는 인정을</u>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가. · 나. (생략)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u>간벌재</u> 이용제품의 인증
 - 2. (생략)
 -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 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 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 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u>.</u>
· 1. (현행과 같음)
1. (현광의 필요) 1의2인증
2. ~ 4.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
1 <u>인증을</u> -
인증을

가.・나. (현행과 같음)
<u><삭 제></u>
라 <u>목재</u>
2. (현행과 같음)
3
ス}

- 4. ~ 10.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략)
- 6. 제14조제2항에 따른 <u>인증 또</u>
 는 인정을 받고 그 <u>인증 또는</u>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
 도록 하거나 그 <u>인증 또는 인</u>
 정을 사용한 자
- 7. ~ 10. (생략)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 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신 설>

- 1. ~ 3. (생략)
- ② ③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
6 <u>인증을</u> -
<u>인증을</u>
인증
슬
7. ~ 10. (현행과 같음)
7. ~ 10.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7. ~ 10.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
,
,
제47조(과태료) ①

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